

사업장 안전점검 사항

항목	꼭 지켜야할 내용	지켜야할 내용의 예시
1 경영자 리더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수립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(인력·시설·장비)을 배정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보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안전보건경영방침 작성 안전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 근로자에게 안전관련 권한 및 책임 부여
2 위험요인 파악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 정리 - 위험장소 및 작업별 위험요인을 파악 위험기계·기구·설비, 화학물질 등 파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미끄러짐, 조리기구 배임, 화상, 가스 노출, 근골격질환 등 유해요인을 파악 간이리프트, 오븐, 가성소다 등
3 위험요인 제거·대체 및 통제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 - 작업별 위험성 평가 실시 - 요인별 제거·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 근로자 교육훈련, 건강검진을 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식재료 입고·보관, 전처리, 조리·배식 - 칼, 제면기, 육절기, 가스, 튀김기, 소독기 사용시 - 작업대 조정, 방호덮개 부착, 가열 방지 장치 장착 안전보건교육(반기 12시간), 채용시(8시간) - 일반건강진단 : 전 근로자(매년) - 특수건강진단 : 유해인자 노출근로자(염산, 불산 등)
4 근로자 참여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해위험기계·기구, 물질, 사고 발생 현황 등 관련정보 근로자 공유 작업전 안전미팅 등 안전제안 활동 실시(주 1회 이상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끼임·미끄럼·배임사고 등 위험 사례 공유 및 예방대책 공유 근로자 의견 청취 반영 후 작업 방법 개선
5 비상조치 계획수립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대산업재해 조치 매뉴얼을 마련 비상조치계획 및 대피훈련을 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화재, 폭발, 끼임 등 대비 대피, 비상 연락망 구축 비상시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고 비상훈련 실시
6 평가 및 개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 되는지 점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위험요인 통제를 위한 목표 달성 평가 1~5 항목을 반기별 점검 후 개선점 조치

※ 음식점·커피전문점·제과점 등 해당 업종별로 보유 장비 및 작업환경에 맞게 변경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.

※ 도급·용역·위탁 시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별도로 필요합니다.
경상남도 홈페이지(<https://www.gyeongnam.go.kr>) 링크를 활용하여 대비하세요.

3 비상훈련 결과 예시

○○식당 비상훈련 결과

훈련명	영업장 화재발생 대피훈련	훈련일시	2024. . .
훈련장소	○○ 식당	훈련 주관	대표자
참석인원	○명	사용 기자재	소화기
훈련내용	조리실 내 가스폭발에 따른 화재발생으로 대피훈련 실시		
훈련결과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초발견자 : 화재경보발령(화재발신기) → 화재신고 분말소화기 이용 화재진압 및 작업자, 식당내 이용객 대피 환자발생 시 응급처치 후 병원후송 		
문제점 및 시나리오 등 개선사항	문제점	개선사항	
	환자발생 시 응급처치 담당자 미지정	담당자 지정 후 환자 이동로 확보하여 긴급대피 조치하도록 조정	
차기계획	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다음번 훈련에 반영하고 비상구 적치를 치우기 등		비상시 비상구 확보와 안내표시 등 설치

중대재해예방! 도움을 받아보세요!



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
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배움온 (<https://learnon.gndamoa.or.kr>)
배움온 → 학습마당 → 중대시민재해 예방학교 →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



산업안전보건공단
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<https://www.kosha.or.kr>)
안전보건공단 → 2024 산업안전대진단 → 자가진단 바로가기



경상남도 GYEONGNAM
경상남도 홈페이지 (<https://www.gyeongnam.go.kr>)
분야별 정보 → 안전 → 중대재해예방

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

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

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서

음식점업



○○식당 안전보건 경영방침

청결한 식당, 안전한 일터를 만듭니다.
2024. 1. 27.

○○식당 대표 ○○○

○○식당 안전보건 경영방침

○○식당은 고객과 직원 모두가 즐겁게 일하고 안전하게 근무하는 사업장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 법규를 준수하고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환경개선을 실시한다.

2024. 1. 27.

○○식당 대표 ○○○

중대재해처벌법 이란?

Q 중대재해란?



- ▶ **중대산업재해** : 식당종사자가 업무로 인해 재해 발생시 (사망자 1명 이상·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·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)
- ▶ **중대시민재해** :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물로 인해 재해 발생시 (사망자 1명 이상·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·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)
- ※ 사망사고(1명이상) :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
질병·부상사고 :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

Q 꼭 지켜주세요!! → **✓ 사업장 안전점검 사항**

- ▶ 사업장 위험요인을 정기·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하기
- ▶ 근로자 의무교육·건강검진 이행 하기
- ▶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·장비를 위한 예산 준비하기
- ▶ 위험상황에 대비한 비상조치 매뉴얼 마련하기

사업주가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아요!!

- ※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.
- ※ 안전전문인력 확보 의무가 없어도 사업주 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(안전보건공단 교육센터 활용 <https://www.safetypedu.net>)

Q 이 서류는 꼭 갖춰야 해요!!

1 위험요인 점검서류

2 비상조치 매뉴얼

3 비상훈련 결과

※ 본 리플렛의 예시사항을 참고하세요.

1 위험요인 점검서류 예시

위험성평가표				공정 : 조리			평가일 : 2024.			
세부 작업명	유해위험요인 파악			현재의 안전보건조치	현재위험성			위험성 감소대책	개선 예정일	완료일
	위험요인	위험분류	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		가능성 (빈도)	중대성 (강도)	위험성			
식재료 입고 전처리 조리 / 담기 배식 세척	기계적 요인	절단 베임 찔림	혼합기 칼날에 손가락 절단 위험	1. 안전덮개 등 설치 2.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 3. 보조도구 사용	1	1	1(하)	- 회전부위 덮개 설치		
	작업환경 요인	부딪힘	주방 시설물 모서리에 충돌	1. 모서리에 완충패드 부착	1	2	2(하)	- 모서리 등 돌출부위 보호패드 부착		
	기계적 요인	끼임	분쇄기에 손가락이 끼임	1. 안전덮개 등 설치 2. 보조도구 사용	1	1	1(하)	- 회전부위 덮개 설치		
	작업환경 요인	넘어짐	물기로 인해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짐	1. 조리실 정리정돈 2. 청결상태 유지 3. 배수상태 정비 4. 미끄럼 방지용 안전화 착용	1	3	3(중)	- 조리실 바닥 수분 수시제거 - 규정된 안전화, 장화 등 보호구 착용		
	작업환경 요인	감전	물정소, 물이 젖은 손으로 접촉 인한 전기감전 위험	1. 누전차단기 설치 2. 이중절연구조 3. 기계 및 전기배선 주변 수분 수시제거	1	3	3(중)	- 조리실 바닥 수분 수시제거 - 기계기구 인입전로 누전차단기 연결 상태확인		
	작업특성 요인	이상온도 물체접촉	뜨거운 국물, 기름 등 인한 화상 위험	1. 안전장갑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2. 고온체 접촉주의 안전보건표지 게시	1	2	2(하)	- 고온체 접촉주의 표지 게시		

2 비상조치 매뉴얼 예시

○○식당 비상조치 매뉴얼

1. 목적

본 매뉴얼은 ○○식당의 비상사태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조치하여 재해의 확산을 차단하여 인적·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.

2. 적용 범위

총돌, 끼임, 찔림, 뒤집힘, 화재, 폭발 등 안전보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및 화재진화 등의 비상대응 활동이 필요한 상황에 적용한다.

- (1)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
- (2) 중대한 화재·폭발·누출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비상사태에 해당 하는 경우

3. 비상대응 내용과 조직 및 임무

비상 시 대응을 위해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, 장비 보유현황을 확인해야 하며, 비상연락 체계 구축 등을 준비한다. 비상사태 발생 시 인원 구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장 비상사태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비상사태에 대응한다.

- (1) 대응조장은 작업중지, 근로자대피 및 긴급구조, 출입통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.
- (2) 조원은 조장 등의 지시에 따라 신속한 대피, 가동중단 업무를 담당한다.

4. 비상사태 대응훈련

- (1) 경영책임자는 매년 사업장 비상조치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한다.
- (2) 사업장 비상사태 대응훈련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. 훈련은 사업장에 발생가능성이 높은 중대재해 중심으로 실시하고 교육·훈련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.

5. 작업중지 및 대피

(1) 작업중지

- ① 종사자는 작업 중 약천후, 화재·폭발, 무너짐, 협착, 충돌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주위 작업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② ①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 종사자는 지체없이 비상경보기 작동 등 가능한 경보 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 관리감독자 등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(2) 구조조치

- ① 중대재해를 목격한 자는 신속히 주위 작업자 등에게 사고발생사실을 알리고,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중대재해 목격자나 목격자로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은 자는 즉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신고하여 응급환자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.

6. 행정관청에 협조

종사자는 화재진압, 재해조사 등을 위하여 소방서, 노동관서, 경찰관서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